

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

1. 고시·공고 명칭

서울공예박물관 총감독 공모 최종선정자 공고문

2. 고시·공고 근거법령 (법령, 조례, 규칙 등 상세 기재)

「서울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조례 제 6472호, 시행 '17.5.18)

「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」(서울시 민관협력관, 시행 '17.6.)

3.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(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)

채용내용을 대상자들에게 알리는 공고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함.

4.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(해당 칸에 ■ 표시)

유형	생략사유	해당여부
A	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·열람·공청회·토론회·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(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)	<input type="checkbox"/>
B	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근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(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)	<input type="checkbox"/>
C	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(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)	<input type="checkbox"/>
D	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(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, 제4호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
5. 작성자

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(서울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), 주무관 고미경